

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6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공제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공제함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
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
고지서 1장당 300원

3. 근거법령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
4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접수사항 없음

5. 기타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해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당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례)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1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 신 설 ></p>	<p>제18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해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관계법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35조(납세의무의 확정)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.

3. 제1호 외의 지방세: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

제74조의2(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)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